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37
----------	-------

발의연월일 : 2026. 8. 19.

발 의 자 : 박정훈 · 정성국 · 최수진
박덕흠 · 고동진 · 서범수
신성범 · 김종양 · 조지연
김장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아울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유수시설을 복개하여 해당 유수시설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청사,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심지역의 가용부지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수시설을 복개하여 학교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예외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

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그 예외 대상 시설에 학교를 포함하여 도심 내 유희 기반시설을 활용한 교육시설 확충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안 제43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단서 중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 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장사시설·종합의료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폐차장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 안의 기반시설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기반시설

나. 궤도설비 및 전기공급설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신 설>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망설비

<u><신 설></u> ② ~ ④ (생 략)	<u>· 방조설비 · 장사시설 · 종</u> <u>합의료시설 · 빗물저장 및</u> <u>이용시설 · 폐차장</u> <u>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u> <u>관한 법률」에 따라 점용</u> <u>허가대상이 되는 공원 안</u> <u>의 기반시설</u> <u>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u> <u>로 정하는 시설</u> 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 <u>역 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u> <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u> <u>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u> <u>우</u> <u>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기</u> <u>반시설</u> <u>나. 궤도설비 및 전기공급설</u> <u>비</u> <u>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u> <u>로 정하는 시설</u> ② ~ ④ (현행과 같음)
--	---